

- 취득세·등록세 신고납부
 - 납세자의 신고가액대로 수납하도록 하고, 시가표준액 이하로 과소신고 납부하는 때에도 신고가액대로 수납
 - 시가표준액 이하의 과소신고 납부시는 금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추징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
 - 미신고·과소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지방세법 개정후 부과·징수 조치
- 신고납부에 따른 유의사항
 - 지방세법 개정전까지의 부과·징수는 납세협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과소신고납부 등에 따른 가산세 부과·징수는 불가
 - 헌법재판소 결정('99. 12. 23)이후 지방세법 개정전 사이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는 취득세 등도 부과·징수 불가 (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제2호의 시가표준액만 적용해야 하는 과세대상에 한함)

[지방세법 개정후]

- 미신고·과소신고 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소급하여 부과징수 조치

3. 2001년도 주요 개선내용

가.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조정

최근 건물에 대한 건물신축비용을 근거로 한 건물기준가액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였는 바 실제 건축비용 대비 현행 기준가액이 아주 낮은 실정이다. 즉, 2001 기준가액(165천원)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 등 3개 기관에서 조사한 2000 신축가액(547천원) 대비 30.2%에 불과하다.